

정합방 찬성서의 유교적 언표와 근대 국가상*

김 윤 희**

1. 머리말
2. 정합방 찬성서 제출자의 담론 지형
3. 유교적 어휘의 재코드화
4. 맺음말

〈국문초록〉

기존 연구는 근대 국가=독립주권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정합방을 둘러싸고 분출했던 다양한 국가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 글에서는 주권개념의 균열과 분열이 근대 국가개념에 내포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유교적 관념의 잔존 또는 온전하지 못한 독립주권 관념으로 간주한 정합방 찬성서의 국가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립주권'을 근대 국가 관념으로 규정하여 진행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또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에서 주제 「국망'과 '합방' 그리고 유교적인 것」 아래 주최한 국내학술대회(2020.8.27.)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대표논저 : 2020, 「1930년 전후 불경기와 경제·노동 관련 어휘-조선인 발행 잡지의 어휘 소개란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91 : 2019, 「근현대 유교담론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현대유림철학연구』 53.

1. 머리말

1909년 12월 4일 일진회는 순종 황제, 이완용 내각 총리, 소네 통감에게 정합방 청원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인 5일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9월 대한협회, 서북학회와 이완용 내각 퇴진 운동을 전개했던 일진회가 돌연 정합방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일본 여론이 한국 병탄으로 급격히 경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후 일본에서는 우과정치 세력이 11월 13일 한국 병탄을 주장하면서 조선문제동지회(이후 대한동지회로 변경)를 결성하였고, 서울의 일본인 기자들이 소위 '경성기자단'을 결성하여 여기에 호응했다. 일본에서 한국 '병탄' 여론이 확산하자 일진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합방을 주장했다.

정합방은 유럽 국가 연합 유형의 하나로 내각과 의회를 독자적으로 두고 외교에 한해서 나라를 통합하는 것으로 『국민신보』에 소개되었다.¹⁾ 일진회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사례를 모델로 하여 외교, 재정, 군사를 통합하고 내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연합을 정합방으로 명명했다. 일진회의 정합방 선언 이후 이를 지지하는 전직 관료, 유생 등의 찬성서가 순종 황제, 이완용 내각 총리, 소네 통감 등에 제출되었다. 또한, 찬성을 지지하는 단체인 국민동지찬성회, 국민협성동지회가 결성되어 정합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황성신문』, 『대한민보』, 『대한매일신보』 등은 이들 주장을 맹비난하고 나섰고, 이완용, 유길준 등은 정합방 지지 활동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정합방 주장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일진회 활동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왔다. 일진회가 일본 대륙 낭인에게 이용당했다거나,²⁾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또는 문명화론에 경도되어 독립주권을 일본에 넘기려 했다가나,³⁾ 대한제국 사회의 비주류로서 독립주권의 이양이라는 극단적 일탈을

1) 「國際法上の 國家」, 『國民新報』, 1909.12.08.

2) 강창일, 2002,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35~240쪽.

3) 서영희, 2008, 「국민신보를 통해 본 일진회의 합방론과 합방 정국의 동향」, 『역사와 현실』 69, 한국역사연구회, 19~45쪽 ; 김종준, 2011, 「국권 상실에 대한 일진회의 인

시도했다고⁴⁾ 지적했다. 이들 연구는 근대 국가=독립주권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정합방 제출을 둘러싸고 분출했던 다양한 국가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진회는 독립주권을 저버릴 만큼, 공동체가 허용할 수 없는 강렬한 정치적 욕망을 가졌고, 정합방을 지지한 유생들은 근대 주권의 의미를 알지 못할 정도로 유교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대 주권국가 질서에 대해 무지몽매한 존재로 여겨졌다.

정합방이 촉발한 논쟁을 개항 이후 형성된 다양한 근대 국가상이 분출했던 계기로 바라본 연구는 갑오개혁 이후 확산한 동양 담론이 근대 국가상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주권-정부-인민의 관계를 어떻게 분할하고 균열시켰는지를 고찰했다.⁵⁾ 이 연구는 정합방 주장과 이를 비판했던 주장을 양분하여 고찰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동양 담론과 주권개념의 분할이란 점에서 일진회, 『황성신문』, 『대한민보』와 『대한매일신보』를 양분하고, 주권과 정부 개념의 관계를 고찰했다. 이 연구는 국가 주권과 정부에 대한 개념이 유기적 상보성이 아니라 분할과 균열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그 분할과 균열이 기존 연구관점을 재고하는 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언급하지 못했다.

근대 주권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 대내적으로는 유일한 하나의 최고 권력을 의미한다. 유럽의 주권개념에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단 하나 최고의 절대적 권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14세기에 확립되었지만, 외부의 다른 정치공동체와의 관계가 독립 평등하다는 관념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공동체 사이의 위계적 관계가 소멸하면서 확립되었다.⁶⁾

유럽의 주권 국가적 질서의 세계적 확산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국가 관계의 소멸이 함께 진행되면서 19세기 말 한국 사회에는 국가 주권

식 : 문명화론과 합방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91~120쪽.

4) 이태훈, 2010, 「일진회의 '보호통치' 인식과 '합방'의 논리, 『역사와 현실』 78, 한국 역사연구회, 347~382쪽.

5) 김운희, 2008, 「동양담론 그리고 주권-정부-인민 관계의 균열과 전복, 『대동문화연구』 68, 대동문화연구원, 333~364쪽.

6) 박상철, 2008, 『국가·주권』, 소화, 203~208쪽.

관념이 빠르게 확산했고, 35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독립 주권’은 근대 국가관을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독립 주권 개념이 국가 내부의 최고 권력인 통치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탐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 존재했던 통치 권은 독립주권의 등장에도 변화가 없었을까? 주권자이자 통치자인 군주가 사라지고 인민이 주권자가 되면 통치자의 역할은 누가 하는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국가 주권개념에는 지배와 통치의 균열, 분리가 내포되어 있다. 주권자는 인민이지만 주권의 실천 형태인 통치가 인민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니라 근대 주권의 근본적 문제-‘주권’ 그리고 그 실천인 ‘통치’ 사이의 분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⁷⁾ 그뿐만 아니라 혁명을 거치지 않고도 주권의 소재가 왕에서 인

7) 국가는 지배와 통치라는 두 개의 핵심적 개념을 통해 사유 되어왔다. 주권(sovereignty)은 대내외적으로 승인된 단일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통치(govern)는 주권의 영역 내부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군주국가에서 형성된 주권자=통치자라는 관념으로 인해 국가는 sovereignty와 govern의 의미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사유되었다. 주권자=인민이란 근대적 상상 속에서 sovereignty는 ‘지배’란 의미로 분명히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통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근대 국가를 포괄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 고찰하기 위해 푸코는 ‘통치성(governmentality)’에 대한 탐색을 제안했다. 그는 근대 통치의 본질은 ‘경제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고, 이것은 16세기 말 이후 유럽에서 등장했고, 18세기에 ‘경제’를 통해 현실적 영역을 확보했다고 보았다. ‘경제의 형식으로 행사되는 권력’을 근대 국가의 특이성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등장과 함께 지배와 통치가 분리되었다고 본다(미셸 푸코 저, 오트르망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 도서출판난장, 146쪽). 아감벤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관념의 기원을 존재와 실천이 절합된 고대 기독교 관념에서 찾는다. 그는 푸코가 언급한 ‘경제형식에 행사되는 권력’의 기원이 로마의 가정경제를 뜻하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였고, 이것에 의해 기독교의 핵심개념인 성부와 성자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연결된 절합의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지배는 실천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통치는 ‘아버지가 없는 성자’와 같이 기원이 없는 텅 빈 장치라고 본다. 주권은 실천하지 않는 국가의 존재로서 무한한 찬양의 대상이 되고, 통치는 주권의 실천으로 탈인격적 기계장치라는 것이다(조르조 아감벤 저, 박진우·정문영 역, 2016,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향하여』, 새물결, 251쪽). 근대 주권개념을 구성하는 지배와 통치가 절합 관계라는 점은 근대 경제영역과 국가 권력의 작동방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민으로 이전되고, 이민족의 지배 또는 통치를 승인함과 동시에 민족 또는 국가에 대한 찬양이 가능했던 사유의 근원은 지배와 통치가 분리된 근대 주권개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권개념의 균열과 분열에 주목했던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고, 유교적 관념의 잔존 또는 온전하지 못한 근대 주권 관념으로 여겨진 정합방 찬성서의 국가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립주권'만을 근대 국가개념으로 상징하고 진행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정합방 찬성서 제출자의 담론 지형

1909년 12월 5일 『국민신보』에는 일진회의 대국민 성명서가 게재되었고, 8일 정합방의 의미를 설명했던 「국제법상의 국가」가 게재되었다. 『황성신문』, 『대한민보』는 일진회를 난신적자, 매군매국, 흉당, 역당 등으로, 『대한매일신보』는 '매국', '마귀' 등으로 맹비난했다. 17일 진신 유생을 자처한 徐彰輔 등 10명의 이름으로 찬성서가 『국민신보』에 게재되었다.⁸⁾ 이들은 통감과 정부에 각각 찬성의 이유를 적어 편지를 보냈다. 찬성서와 함께 『국민신보』 기자가 밝힌 서창보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그는 1896년 중전의 복수 상소와 1898년 고종의 환어 상소를 올렸으며, 황국협회 회원으로 독립협회를 '박멸'하고, 1905년 을사조약과 일진회의 조약 찬성서에 반대하고 을사오적 모살을 도모하다 10년 유배형을 받았지만, 이번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러한 장서를 올렸다고 했다. 기사가 밝힌 이력을 보면 서창보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실천에 옮긴 자로 『황성신문』 등이 비난하는 '역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서창보는 1896년 한성부 주사를 역임하고 1899년 충북 음성군의 군수를 지냈고, 1903년 중추원 의관, 1905년 변리공사를 지냈던 인물이었다.⁹⁾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독립주권'을 근대 국가의 가장 핵심적 개념으로 전해왔던 기존 연구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유를 확대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8) 「上統監書」, 『國民新報』 1909.12.17 ; 「上政府書」, 『國民新報』 1909.12.17.

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 『2006년도 조사보고서Ⅱ- 친일반민족행위결

그리고 황국협회 회원이 되기 전에는 독립협회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기도 했다.¹⁰⁾ 1907년에는 나철 등과 함께 권중현 암살 미수사건으로 귀향 10년 형을 받았으며,¹¹⁾ 1909년 12월 22일 이재명의 이완용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암살미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심문을 받기도 했다.¹²⁾

서창보와 함께 연명한 자는 전 주사 梁在承, 洪性觀, 金元錫, 鄭雲洪, 전 참봉 俞致永, 전 사과 黃昌浩, 그리고 幼學이라고 밝힌 朴元夏, 朴寅夏, 徐仁輔였다. 이 중 서창보와 함께 이완용 암살 미수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 주사 양재승, 김원석, 전 사과 황창호 그리고 유학 서인보 4명이었다. 이들은 서창보와 함께 을사오적 암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자들로 추정된다. 서창보를 제외한 4명의 주사는 이후 관직이 확인되지 않는다. 황창호는 사과로 실직은 아니었다. 이들은 서창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울 거주 양반들로 1894년 이후 전개된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해왔던 인물로 추정된다.

이들이 통감에게 올린 장서에는 “강대한 나라가 약소한 나라를 병탄하고 문명한 민족이 야만의 민족을 취하는 것은 자연법칙”이라고 하여 극단의 사회진화론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완고파’와 ‘匪徒輩’ 즉 의병을 동시에 비난하고, 동양평화를 언급하는 등 문명화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었다.¹³⁾ 정부에 올린 장서에는 이완용을 “망한 나라의 대부와 나라를 팔아먹은 적신”으로 표현했고, 소요를 부추기고 백성의 일에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¹⁴⁾ 이완용 내각을 강하게 비난한 것은 1905년 이후 『황성신문』 등이 주장해왔던 정부 개혁론과 1909년 9월 대한협회, 일진회, 서북학회가 이완용 퇴진 운동을 전개했을 때 생산된 담론의 영향으로 보인다.

뒤이어 22일에는 경기, 황해,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의 7도 유생대

정이유서』, 679~688쪽.

10) 「補助金收入人名」, 『大朝鮮獨立協會回報』 2, 1896.12.15.

11) 「會員動靜」, 『大韓自強會月報』 13, 1907.07.25.

12)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09.12.24, 「證人 徐彰輔 訊問調書」, 『總理大臣李完用謀殺未遂事件記錄』.

13) 「上統監書」, 『國民新報』 1909.12.17.

14) 「上政府書」, 『國民新報』 1909.12.17.

표를 자임한 이규학 등 7명의 장서가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 소네 통감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들은 “초야에 묻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지만 “祖宗의 500년 교화”를 입은 자로 임금의 신하가 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춘추대의’를 알고 있는 자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체국을 통해 전파된 정합방 주장을 의심하고 향당 노인들에게 묻고, 서울의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고, 13도의 동지들이 신문을 보고 분석을 하면서 정합방의 의미를 차츰 알게 되었으며, 국제공법을 구해 보고서야 정합방이 “임금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는 의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13도 대표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방 유생들을 직접 방문하여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¹⁵⁾

나아가 “한국이 일본을 배신하고서 외롭게 혼자 설 수 없으며, 일본이 한국을 병탄해서 은근히 혼자 생존할 수 없으니 ... 합방의 제창은 輔車나 새의 양 날개처럼 한 치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사이로 정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합방으로 ‘황실만세존영’과 ‘인민일등대우’가 이루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본성으로 우리 임금과 우리나라의 大義를 영구히 지키고, 피상적이거나 춘추의리를 얻었으니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생 건백서’란 제목의 이 장서에서 정합방은 임금과 나라를 지키는 ‘춘추대의’로 명명되었다.

이완용 내각에 보낸 편지에서는 일진회의 정합방이 “나라의 기운이 날로 약해지고 민생이 날로 피폐해져 ... 회생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명현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논자는 혹 현상 유지를 말하지만” 죽음의 상황에서 손 놓고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¹⁶⁾ 현상 유지를 말하는 자는 바로 『황성신문』과 『대한민보』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 시기를 ‘국망’이라는 극단의 시대로 인식했다. 국가의 발전과 민생의 안정을 위한 실천의 부재,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쇠락하고 민생이 파탄 났다고 보았다.

서창보 등의 장서에는 문명화 담론의 표현이 많았고, 이규학 등의 장서에는 임금과 나라를 지키는 보국론의 표현이 많았다. 이들 찬성서를 포함

15) 「儒生の 建白書」, 『國民新報』 1909.12.22.

16) 「上內閣書」, 『國民新報』 1909.12.25.

하여 대부분의 찬성서는 문명화 담론과 보국 담론이 섞여 있었고, 민생 파탄, 무질서와 혼란 등 ‘통치’ 실패가 마비된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찬성서를 제출한 이들은 어떤 부류였을까?

전직 관료층과 지방 유생층의 찬성서를 포함하여 1910년 3월까지 대략 16그룹의 47개의 찬성서가 『국민신보』에 게재되었다. 16개 그룹은 7도 유생 이규학 등의 장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관직을 밝힌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장서의 수신인은 소네 통감, 이완용 내각 총리, 가쓰라 일본 내각 총리, 일본 메이지 천황, 일진회, 국민찬성동지회 등 다양했다. 1909년 12월부터 1910년 3월 사이 『국민신보』에 게재된 찬성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206명이었고, 일한합방기념탑 내 석실에 넣을 공로자 방명에 수록된 합방 찬성서 진신 유생은 80명이었다.¹⁷⁾ 『국민신보』 게재 찬성서 명단 206명과 한일합방기념탑 공로자 방명의 80명 중 중복 명단 36명을 제외하면 정합방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는 총 250명이었다.

〈표 1〉 정합방 찬성자 250명 현황

	지위 또는 소속	인원수	비고
품관직이 있는 경우 (101명)	관직	56명	2품(2명), 3품(10명), 6품(10명), 7품(2명), 승지(1명), 군수(5명), 주사(14명), 참봉(4명), 기타(8명)
	진신 유생	7명	
	군인	38명	
품관직이 없는 경우 (133명)	당파	33명	노론(13명), 소론(9명), 남인(7명), 북인(4명)
	유학(또는 유생)	83명	유학(32명), 유생(51명)
	신사, 선달, 진사	17명	신사(13명), 선달(1명), 진사(3명)
기타 (16명)	애국생	6명	
	부보상대표	1명	이학재
	서북학회	2명	정운복, 최석하
	미상	7명	
합계	250명		

17) 鈴木一郎, 1934, 『日韓合邦紀念塔寫眞帖』(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Ⅱ』, 149~150쪽에서 재인용).

찬성서에는 이름 앞에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밝힌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표 1>은 스스로 밝힌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다. 스스로 밝힌 이들의 지위를 보면 크게 품관직 경력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품관직 경력이 있는 경우 품관이 24명, 관직이 32이다. 품관은 2품~7품, 관직은 승지~참봉까지 걸쳐 있었다. 기타는 사과, 의관 등 실직이 아닌 경우였다. 정3품 승지를 지낸 이범찬은 서창보 등과 국민동지 찬성회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¹⁸⁾

찬성자 250명 중 품관직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133명이다. 그중 당파를 밝힌 33명은 모두 일한합방기념탑에만 이름이 있는 경우였다. 尹滄榮(노론)은 전주 간재의 직전 제자였고,¹⁹⁾ 孔在憲(노론)은 이항로의 제자로 공자의 53세손 孔紹의 23세 후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891년 공자의 고향인 魯城(산둥)에 가서 공자의 후손인 孔昭謙이 소장하고 있던 공자의 聖蹟圖를 가져왔다. 1902년 이 성적도를 전국에 전파하자는 논의가 일어나자 송병선이 그 서문을 작성했다.²⁰⁾ 그리고 1905년 학부대신 이재극과 전찬정 조병식이 이것을 각도에 봉안하기 위해 13도 각 군에 400~500냥을 바치게 하고, 돈을 거두는 孔子派員을 보내서 관찰사와 수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²¹⁾ 강건선(남인) 역시 이항로의 제자로 유인석, 최익현과 교유했던 인물이었다. 또한, 대동학회 회원이었던 윤홍섭(노론)은 1908년 기호흥학회에 「雖舊維新」을 기고하여 옛날의 학문이 곧 현재의 학문이라는 양계초의 언설을 이용하여 신구학문의 조화를 통해 「開物新民之業」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이는 유교의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유교구신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일한합방기념탑에 유생으로 등재된 인물은 18명인데 徐輔를 제외한 17명은 모두 『국민신보』 찬성서 중 서창보 등 장서, 이규학 등 장서, 김현영

18) 「時事一掬」, 『皇城新聞』 1910.01.30.

19) 윤회영은 1866년생으로 자는 順五이며 본관은 海平이다. 「答尹滄榮」이란 제목으로 전우가 윤회영에게 보낸 편지가 『艮齋私稿』 13권에 4편이 존재하고, 「贈尹滄榮李陽中序」가 『艮齋私稿』 38권에 1편 존재한다.

20) 「聖蹟圖序」, 『淵齋先生文集卷之二十四』.

21) 황현, 「성적도의 각도 봉안 소동」, 『국역 매천야록』 4권.

22) 「雖舊維新」, 『畿湖興學會月報』 2, 1908.09.25.

등 장서, 이범찬 등 장서에 이름을 올린 자들이었다. 장서를 올린 그룹 전체가 일한합방기념탑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 17명 중 국민동지찬성회 장서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은 이규학과 김현영이다. 김현영은 김현영 등 장서, 유생찬성서, 일진회장에서 보낸 편지에 이름을 올렸다. 김윤식이 그에 대하여 銘을 지은 것을 보면 그와 관계가 있었던 인물로 추정된다.²³⁾

유생 또는 유학을 자처한 자 중 『국민신보』에 이름을 올린 65명은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품관직이 있는 자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회 인물, 전우와 이항로 학파의 인물과 함께 장서를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앙 정계와 지식계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자들로 보인다. 특히 7도 유생대표를 자임했던 장서의 이규학 그리고 1910년 1월 22일 『국민신보』에 「유생찬성정합방」으로 소개된 장서의 김현영과 최영순은 서창보 등과 함께 국민동지찬성회를 결성했다. 국민동지찬성회는 서창보 등의 전직 관료, 대한협회 회원, 상무조합 부장, 권직상과 교우관계였던 이청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찬성자의 이러한 분포를 볼 때 찬성서를 제출한 유생 중 상당수는 계몽운동 세력이 생산한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경우, 애국생은 6명, 보부상대표 1명, 서북학회 회원 2명이었다. 보부상대표 이학재는 국민동지찬성회 찬성서에서는 6품이란 품계를 사용했다. 서북학회 회원이었던 정운복은 1906년 서북학회를 조직하고, 『경성일보』의 한글판, 『제국신문』의 주필을 맡았던 인물이었다.²⁴⁾

서북학회 회원임을 자임한 경우는 정운복과 최석하 2명이었지만, 서창보를 비롯하여 최영고(노론),²⁵⁾ 서상춘(노론),²⁶⁾ 김동찬(소론),²⁷⁾ 이동춘(전 주사)은²⁸⁾ 정합방 찬성서 제출 이전 대한협회 회원이었다. 강봉흠(6

23) 「晩香齋銘」, 『雲養集』 11.

24) 그는 1918년 총독부 경무부 촉탁을 지냈고, 1919년에는 친일 밀정 암살단을 조직하고 암살미수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대동단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의이유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6, 238~248쪽).

25) 「會員名簿」, 『大韓協會回報』 4, 1908.07.25.

26) 「會員名簿」, 『大韓協會回報』 3, 1908.06.25.

27) 「會員名簿」, 『大韓協會回報』 8, 1908.11.25.

28) 「會員名簿」, 『大韓協會回報』 6, 1908.09.25.

품)은 대한협회 전신인 대한자강회 회원이었다. 강일(소론),²⁹⁾ 김교현(소론),³⁰⁾ 권직상(중2품),³¹⁾ 이호원(전 도사)은³²⁾ 기호흥학회 회원이었고, 윤홍섭(노론)과 성인호(소론)는³³⁾ 대동학회 회원이었다. 학회 회원 경력자로 확인되는 인물은 관직 경력자 7명, 관직 경력이 없는 노론(3명)과 소론(4명)이 7명이었다. 대한협회사와 기호흥학회는 문명화론, 사회진화론 등을 생산하고 확산했던 단체였고, 대동학회는 동양 담론, 동양 문명화론 등을 생산하고 확산했던 단체였다. 특히 대한협회는 정부 개혁론과 정당 정치론을 주장했던 단체로 서북학회, 일진회와 이완용 내각 퇴진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였다.

서북학회를 포함하여 4개 학회 회원 경력이 확인되는 자들이 이름을 올린 찬성서 그룹은 ‘서창보 등’,³⁴⁾ ‘이범찬 등’,³⁵⁾ ‘권직상 등’,³⁶⁾ ‘이칭익 등’,³⁷⁾ ‘국민동지찬성회 장서’³⁸⁾ 그리고 ‘국민신보에 보내는 장서’³⁹⁾였다. 권직상 등의 장서에는 정합방이 “황실의 종사를 높이고, 백성과 동포를 보호하고, 우방의 충고와 지도 아래 함께 문명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문명화론의 서사가 등장했다. 이칭익 등의 장서에는 동양존망의 위기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는 찬성서의 서사가 계몽운동 단체들이 생산했던 문명화와 동양 담론의 자장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중 지역 정보가 확인된 자는 119명이었다. 경상도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33명의 경기(서울 포함), 19명의 충청도가 뒤를 이었다. 경상도는 경상북도가 경상남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생층의 비중도

29) 「興學祝辭」, 『畿湖興學會月報』 7, 1909.02.24.

30) 「贊務員名錄」, 『畿湖興學會月報』 1, 1908.08.25.

31) 「會員名簿」, 『畿湖興學會月報』 1, 1908.08.25.

32) 「會員名簿」, 『畿湖興學會月報』 12, 1909.07.25.

33) 「會員錄」, 『大東學會月報』 1, 1908.02.25.

34) 「上統監書」, 『國民新報』 1909.12.17. ; 「上政府書」, 『國民新報』 1909.12.17.

35) 「儒生の 建白書」, 『國民新報』 1910.01.16.

36) 「縉紳儒生の 長書」, 『國民新報』 1910.01.23.

37) 「縉紳等上統監書」, 『國民新報』 1910.01.26 ; 「李稱翼氏等寄函」, 『國民新報』 1910.02.01.

38) 「國民同志贊成回趣旨書」, 『國民新報』 1910.01.25.

39) 「國民同志會長書」, 『國民新報』 1910.02.08.

매우 높았다. 서울은 관직 경력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경기는 유생층의 비중이 높았지만, 관직 경력자, 애국생 등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전남과 경남 지역 찬성자는 매우 적었다.

〈표 2〉 지역 정보를 밝힌 인물 119명의 분포 현황

지역		인원수	
경기 (33명)	한성	9명	품관직(6명), 진신(2명), 기타(1명)
	경기	24명	품관직(4명), 유생(12명), 애국생(6명), 기타(2명)
충청도 (19명)	충남	10명	품관직(3명), 유생(7명)
	충북	9명	품관직(1명), 유생(7명), 미상(1명)
전라도 (9명)	전북	7명	품관직(2명), 유생(3명), 미상(2명)
	전남	2명	유생(2명)
경상도 (40명)	경북	37명	품관직(1명), 신사(13명), 유생(23명)
	경남	3명	품관직(1명), 유생(2명)
강원도		2명	유생
서간도		16명	품관직(5명), 유학(6명), 기타(5명)
합계		119명	

3. 유교적 어휘의 재코드화

1) 춘추대의의 재해석

정합방 찬성 유생들은 국제관계를 중화 질서의 틀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독립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기존연구의 일반적 평가였다. 더구나 그들이 사용했던 ‘宗廟’, ‘社稷’, ‘德政’, ‘義’, ‘春秋大義’ 등의 어휘는 주권, 정부, 합리성, 공공성, 국가이익 등 근대 국가를 상상할 때 연상되는 어휘와 비교할 때 전통적이며 유교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주권’이란 개념이 근대 국가상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유교적 어휘를 사용했다고 그들이 유교적 사유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할 수 없다. 어휘의 함의가 변화되었거나, 어휘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면 사유 또한 변화된 것이다.

지배가문을 뜻하는 종묘, 나라를 뜻하는 사직, 지배자의 이상적 통치였던 덕정, 군신의 관계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의미했던 의와 춘추대의 등 유교적 어휘가 어떠한 맥락에 놓여 있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립주권’개념과 관련하여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등장했던 ‘의’가 어떠한 의미망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서창보 등 진신 유생 10명이 올린 첫 번째 찬성서에는 “한일관계는 영토가 인접하여 인종이 서로 같으며 문자가 서로 비슷하여 脣齒之勢와 兄弟之義”가 수천 년 역사상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했다.⁴⁰⁾ 이규학 등 7도의 유생대표가 올린 장서에는 정합방은 “임금과 나라에 대한 大義”이고, 그것이 시행된다면 “필부의 뜻이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春秋大義’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⁴¹⁾ 이 두 찬성서는 모두 소네 통감에게 보낸 것으로 정합방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한일간의 의리와 보국의 의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이규학 등의 장서에서는 ‘의리’, ‘대의’, ‘춘추대의’ 등의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의리가 정합방의 연관어로 등장했다. 이는 정합방 주장과 지지가 ‘난신적자’, ‘역적’의 행위라는 『황성신문』 등의 비난을 정변으로 부정하여 자신들이 충과 의를 지키는 자들임을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춘추대의’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임금과 나라에 대한 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성신문』은 1월 7일 「是日에 講春秋大義 하야 布告天下」란 제목의 논설을 게재하여 정합방과 ‘춘추대의’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⁴²⁾ 『황성신문』은 孔夫가 탄생한 지 2416년이 되는 庚戌年 에 “우리의 報筆은 공자의 春秋筆義로서 시시비비의 公理를 발포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춘추를 ‘明天理 正人心’하고, ‘천하의 난을 구’하고, ‘만세의 법’을 전한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우리 대한의 公義가 不立하고 民志 靡定하여 시비가 糾紛하며 충역이 混淆한 가운데 종종 도깨비의 무리가 아우성을 치고 일어나서 4천 년 신성한 역사를 더럽히고 멸망시켜 2천만 중에 민족에 치욕을 더하고”

40) 「上統監書」, 『國民新報』 1909.12.17.

41) 「儒生の 建白書」, 『國民新報』 1909.12.22.

42) 「是日에 講春秋大義 하야 布告天下」, 『皇城新聞』 1910.01.07.

있는 이때 춘추대의의 본지를 천하에 포고한다고 했다. 창간 이후 유교를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동양의 동질성으로 구상해왔던 『황성신문』은 ‘춘추’를 재해석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자칭하고 나섰다.

『황성신문』이 선포한 춘추대의 3가지는 ‘討賊’, ‘自強’, ‘大同平和’였고, 이 3가지는 세상을 구할 중요한 방침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술년 ‘庚’는 ‘更’이라고 하면서 ‘民德의 更新’, ‘事業의 更新’을 통해 과거의 비운을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황성신문』이 춘추대의로 제시한 3가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적’은 난신적자를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 대한 인사는 춘추의 義를 확실히 잡고 난역의 일자가 발생하면 마음으로 베고, 혀로 꾸짖고 ... 전국 동포가 모두 충애의 혈과 충애의 혼으로 하나의 團을 결성하여 조국의 불운을 만회하며 민족의 위기를 轉移하기로 각자 결심하는” 것이었다. 즉 임금에 대한 충애의 정신으로 정합방 주장과 지지자를 역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곧 춘추대의라는 것이다. 토적은 난신적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據亂世를 평정하는 방법으로 공자가 『춘추』에서 제시한 것이었다.

‘자강’은 “나라가 도를 잃고 망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이고 사람이 망하게 함이 아닌 義”로 ‘自守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 동포는 춘추의 이 義를 體認하여 국민 의무와 사회사업에 관하여 혹 그 실패가 있을지라도 시운에 유혹되지 말며 타인을 미워하지 말고, ... 자강 자립하는 국민의 자격을 세계에 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황성신문은 자강이 달성되기 전까지 ‘현재’의 보호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국 체제를 위협하는 정합방 주장을 맹비난했고, 춘추대의를 빌어 이들을 난신적자로 규정한 것이었다. ‘자강’은 『춘추』에서 국가들이 서로 자립하고, 국가 내부를 잘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升平世’의 중요한 실천행위였다.

‘대동평화’는 “춘추의 세에 열국이 경쟁하여 恃強蔑弱하는 不道, 不法의 일이 많음으로 특히 講信修睦의 義를 들어서 천하 열국이 그 信을 講하고 그 睦을 修하여 大同平和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쟁 시대에 강신수목이 행해지지 않으면 ‘強凌弱하며 衆暴寡’의 악행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민생에 재앙이 미치기 때문에 이 미덕을 숭상하여 열국이 이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수목은 국가경쟁 시대인 승평세

에 외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실천행위였고, 대동평화는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대동평화는 『춘추』에서 이야기하는 太平世로 열국이 大一統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황성신문』에 제시한 3가지 춘추대의는 『춘추공양전』의 長三世說에서 이야기하는 거란세와 승평세의 핵심적 실천과제였다. 청말 상주의 가학에서 출발한 공양학은 龔自珍, 魏源에서 莊存與, 劉逢祿으로 이어지면서 『춘추』의 長三世說이 강조되었고, 무술 변법파였던 康有爲, 譚嗣同, 梁啓超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정치개혁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공양학은 존삼통설(存三統說), 장삼세설(張三世說), 이내외설(異內外說)을 주장하고, 그중 이내외설은 장삼세설과 결합하여 대동사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거란세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국과 타국을 구별하여 자국만의 번영을 도모하며, 승평세에는 동족끼리는 화합하되 이족과는 구별하고, 태평세에 이르면 이족의 차별을 없애고 이족도 동족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양학과에 의해 구성된 대동사상은 사회진화론의 발전론을 유교적 연표를 통해 재해석한 것이었다.⁴³⁾

량치차오는 공양학의 삼세론과 嚴復의 天演論(사회진화론)을 토대로 근대 주권국가의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실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03년 발간된 량치차오의 『飲水室文集』이 국내에 보급되면서 유교적 어휘로 재구성된 사회진화론, 자강론 등이 확산하여갔다. 유교개신론, 유교구신론 등 유학을 새로운 학문을 통해 재의미화하려는 다양한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ang유웨이의 대동사상이 수용되었고, 박은식 등 유교를 종교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⁴⁴⁾ 새로운 사상에 의해 유학이 재해석되면서 유교적 어휘는 원전의 의미망에서 탈각되어 새로운 사상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와 어휘들의 관계 역시 변화되었다.

『황성신문』에 의해 해석된 춘추대의는 조선 후기 형성된 춘추대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춘추대의는 대외인식의 기본

43) 이영란, 2015, 「상주 공양학과 변법 공양학의 치세론」, 『인문사회』 21, 11, 375~394쪽.

44) 김현우, 2013, 「梁啓超와 朴殷植의 ‘新民說’과 ‘大同思想’에 관한 연구 : ‘個人’, ‘國家’, ‘文化’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쪽.

틀로서 ‘尊華攘夷’를 의미했다. 춘추대의에 대해 허목은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게 하며, 인의를 귀하게 여기고 거짓된 힘을 천하게 여기며, 중국을 존엄하고 이적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했다.⁴⁵⁾ 송시열은 춘추대의를 ‘오랑캐는 중국에 들어 올 수 없고 금수는 인류와 같은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第一義고, 명나라를 위해 복수하는 것(爲明復讐)이 第二義’라고 했다.⁴⁶⁾

18세기 춘추대의는 기호학과와 정권의 이념적 기반이었지만 호론에 비해 집권 세력인 낙론의 경우는 그것의 이념적 강도가 약했다.⁴⁷⁾ 그러나 통치 권력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정조대에도 유지되었고, 그 의미도 송시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⁴⁸⁾

개항 이후 송시열의 정신을 계승한 화서학과는 오랑캐의 범주를 청에서 일본과 서구로 확대하고 유교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는 조선뿐이라는 의식을 토대로 엄격한 척사위정을 주장했지만, 신사척사 운동 이후 이러한 춘추대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점차 상실했다.⁴⁹⁾ 그래서 ‘춘추대의’란 어휘가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황성신문』이 1910년 1월 춘추대의를 선포하기 이전에 이 어휘가 등장한 기사는 2건에 불과했다. 하나는 1900년 일본 망명에서 돌아온 안경수와 권형진을 정식 재판 없이 교형에 처한 평리원 재판장 임시서리 이유인의 행위를 ‘춘추대의’로 규정한 것이다. 이유인이 이 사건으로 귀향에 처하자 그 부당함을 알리는 호남 유생들의 상소에서 ‘춘추대의’는 역적을 처벌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었다.⁵⁰⁾ 춘추대의의 발화자는 『황성신문』이 아닌 호남의 유생들이었다.

다른 하나는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자, 같은 황인종인 일본이 같은 집안사람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한 논설이었다.⁵¹⁾ 同洲, 同種, 同隣, 同

45) 許穆, 「春秋設」, 『記言』 권31, 158쪽.

46) 「記述雜錄」, 『宋子大全』 부록 권19, 28쪽.

47) 최영성, 2014, 「남당학의 근본 문제와 학파의 계승 양상-춘추대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1, 314~319쪽.

48) 김동석, 2015, 「李士龍의 춘추대의에 대한 가치와 시대적 의미」, 『漢文古典研究』 31(1), 167~192쪽.

49) 김낙진, 2004, 『의리의 윤리와 한국의 유교문화』, 집문당, 212~213쪽.

50) 「討李救李」, 『皇城新聞』 1900.06.04.

情, 同文, 同軌의 國과 異洲, 異種의 人을 비교하여 遠近親疎를 구분하는 것은 天理와 人情인데 이는 ‘춘추대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동종과 이종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맞는 관계로 遠近親疎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춘추의리란 것이다. 또한, 이 기사에는 공자가 『춘추』 240년 이후에 필법을 달리했다는 공양학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동종과 이종을 구분하여 이에 따라 대우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공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승평세의 실천행위였다.

『황성신문』이 춘추의리를 들어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앞서 한일관계를 동종에 대한 근친의 의리로 설명해왔기 때문이었다. 1904년 3월 17일 한국에 온 이토를 환영하는 논설에서 러일전쟁은 “한일 양국이 합심하고 힘을 합하여 자주의 권한을 잃지 않고 같은 배를 탄 의리(共濟同舟之義)로 함께 건너가서 위태로운 국운을 만회하며 유신의 과업에 분발하는 것도 오직 급일부터이다.”⁵¹⁾ 라고 해석되었다. 동양을 지키기 위해 한·일이 합심하는 것이 곧 의리라는 것이었다. ‘의리’는 운명을 같이하는 동종 내부의 친선과 우호를 유지하는 이념적 기제였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주의를 비판하거나, 한일의 협력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유교적 언표였다.

그렇다면, 찬성서의 춘추대의, 의리 개념은 『황성신문』의 그것과 다른 것이었을까? 정합방을 ‘춘추대의’와 연결 지은 7도 유생대표 이규학 등 10명의 장서에 春秋義理는 2번, 大義는 2번, 義理는 2번 사용되었다. 이들은 정합방이 ‘황실만세존영 인민일등대우’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임금의 신하로 국가를 지키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합방이 이루어진다면 임금과 나라의 대의를 영원히 지키고, 춘추의리를 얻게 된다고 했다.

임금과 국가를 지키는 의리가 일본과 ‘政合’하는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안으로는 빼앗기지 않으려 하면서 아무리 먹어도 싫증 내지 않는 신하가 권력투쟁을 벌이고 밖으로는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는 무리가 화를 키우고” 있어서 민생은 곤궁해지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51) 「厚薄親疎春秋之義」, 『皇城新聞』 1904.05.05.

52) 「伊藤大使來韓關係」, 『皇城新聞』 1904.03.19.

었다. 이들은 이완용 내각의 권력투쟁과 의병 전쟁, ‘안중근 의거’로 나라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였다고 인식했고, 이토 히로부미 사망 이후 일본 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병탄론’을 거부했다. 그리고 일본과 정합방하는 것이 임금을 지키고, 인민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독립주권에 대한 관념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를 ‘脣齒輔車’의 한일관계를 통해 벗어나 보겠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돈독한 친선’이 ‘동양평화’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표현에는 앞서 언급했던 『황성신문』의 同種과 異種, 遠近親疎를 구분하는 의리 관념이 배후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의리’는 앞서 『황성신문』과 유사하게 일본의 ‘병탄’ 주장을 비판하는 이념적 기제로 기능하기도 했다.

의리와 정합방의 관계에 대한 서사는 이후 게재된 찬성서에도 지속해서 등장했다. 특히 권상하의 후손이었던 권직상(종2품) 등의 장서는 정합방 = 의리란 담론의 자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제사 중 그의 사상을 승계한 적통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직계 후손인 권직상이 정합방 찬성대열에 합류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月沙 李廷龜와 澤堂 李植⁵³⁾의 후손인 이칭익과 이호원 등 소위 ‘忠盡世家’의 자손들이 권직상과 함께 찬성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칭익과 이호원은 권직상을 필두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 보낸 편지에서 일본의 대한동지회의 ‘병탄’ 주장이나 이완용이 제출한 합방 5조건이 실현되지 않게 하려면 정합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⁴⁾ 이들은 스스로 ‘국가의 대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대한동지회와 경성기자단의 병탄 주장, 그리고 이완용의 합방 5조건은 ‘동양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정합방은 국제법상으로 황실의 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⁵⁾ 이들은 ‘병탄’을 황실과 인민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이완용의 합방 5조건은 황실은 존재하나 인민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황실과 인민이 모두 존재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

53) 이정귀와 이식은 張維, 申鉉과 함께 한문 4대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정귀는 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고, 이식은 대사헌, 형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냈다.

54) 『縉紳儒生の 長書』, 『國民新報』 1910.01.23.

55) 『縉紳等上統監書』, 『國民新報』 1910.01.26.

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일본에 요청하는 것은 동종 사이의 근친 의리였다.

『황성신문』은 이들이 일진회의 주장에 홀려서 국가의 逆臣, 동포의 죄인, 祖先의 悖孫이 되었다고 비난했다.⁵⁶⁾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권직상은 『황성신문』에 이칭익 등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우리 선조가 전수한 心箴⁵⁷⁾이 義秉春秋 4자로 一符要訣한 것인데 내가 어찌 조상의 경계를 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⁵⁸⁾ 이에 이칭익은 그가 마치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행동은 박쥐와 같은 행위로 논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⁵⁹⁾ 권상하가 장서를 올렸는지에 대한 진위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춘추대의’란 어휘가 유생들을 추동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합방과 의리의 관계는 일진회가 정합방을 청원하자마자 『황성신문』이 이들을 ‘난신적자’로 규정하면서 연결되었고, 『황성신문』은 ‘춘추대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의리’ 개념을 전유하고자 하는 논쟁을 격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이 소환되면서 정합방은 『춘추』에서 이야기하는 ‘대동’의 실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당시 대다수 유생층은 1898년 상해에서 량치차오가 출판한 『대동합방신의』 또는 다루이가 일본에서 출간한 『대동합방론』을 읽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합방은 다루이 도키치의 주장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진신 유생을 자칭한 정3품 김재룡은 소네 통감에게 보낸 장서에서 일본의 대한동지회, 경성기자단의 논의는 “귀국 민족의 고명한 선비인 森本”의 논의와 다르다고 했다. 森本은 다루이 도키치를 지시하는 것이었다.⁶⁰⁾ 김재룡은 “의(義)와 이(利)는 섞이기 전에 이를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은 의가 이가 아닌 적이 없기 때문이니 일본 정부가 정합방을 실시하면公私

56) 「見蚊拔劔을 亦不可已」, 『皇城新聞』 1910.01.25.

57) 송나라 范浚이 지은 『香溪集』의 心箴편에 실린 시로 주희가 이를 존중해 맹자의 주로 인용했다고 한다.

58) 「寄書」, 『皇城新聞』 1910.01.30.

59) 「寄函」, 『國民新報』 1910.02.01.

60) 다루이 도키치가 중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森本이란 성을 승계했고, 1893년 『대동합방론』을 출간할 때 森本丹芳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丹芳은 다루이의 호다.

와 義利의 구별이 반드시 명료해질 것”이라고 했다.⁶¹⁾ 그리고 애국생을 자처한 이종설 등은 “초야의 필부로 더불어 대사를 논의하지 못하지만, 피상적인 춘추의리를 사람들이 대개는 가지고 있으니” 『국민신보』가 그 가르침을 달라고 호소했다.⁶²⁾

『황성신문』과 정합방 찬성서의 의리는 임금과 나라를 지키고, 동종인 일본과 우호, 친선, 합심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양 담론의 자장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다만, 양자의 차이는 한일 ‘근친’ 관계의 구체적 형태였다. 『황성신문』은 ‘보호국’의 유지를, 찬성자들은 정합방을 주장했는데 이는 ‘자강과 자립’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황성신문』은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채 을사조약 전문에도 있었던 ‘부강’의 달성을 통해 독립될 수 있다고 보았고, 찬성자들은 국가경쟁 시대에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방’을 통해 국가를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연방’은 보호국 체제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춘추대회는 1905년 이후 확산한 사회진화론과 공명하는 연표로 등장했다. 『황성신문』이 이 어휘를 통해 사회진화론의 유교적 해석인 공양학의 담론과 공명하고 있었듯이 찬성서 역시 승평세 단계의 실천행위 중 하나였던 동종의 근친 의리에 기초하여 동양의 유지와 문명화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다.

2) 지배와 통치의 분리

일진회의 청원서와 지지자의 장서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황실만세준영’과 ‘인민일등대우’였다. 정합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성서에서도 조금씩 달랐다. 일진회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1867년~1918년)을 모델로 제시했지만, 국민동지찬성회 등은 스웨덴-노르웨이 제국(1814년~1905년)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를 능력 있는 일본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³⁾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스웨덴-노르웨이제국은 소위 ‘물상연합’으로 오

61) 「縉紳上統監書」, 『國民新報』 1910.02.20.

62) 「貴新聞記者諸公足下」, 『國民新報』 1910.03.01.

63) 「儒生の 建白書－上統監書」, 『國民新報』 1910.01.06.

스트리아(합스부르크왕가)와 스웨덴(카를왕가)의 왕을 헝가리와 노르웨이가 받아들이는 대신 헝가리와 노르웨이의 자치권을 유지하는 형태였다.

헝가리는 16세기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30년 전쟁 결과 다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하에 놓였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쇠퇴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분할되었고, 다시 1867년 오스트리아와 연합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되었다.⁶⁴⁾ 헝가리는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등 차지권을 보장받았고, 군사, 재정,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가 구성한 지역의 대표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⁶⁵⁾

스웨덴-노르웨이제국은 노르웨이가 1814년 헌법을 개정하여 귀족제를 폐지하고, 스웨덴의 카를 13세를 연합 제국의 왕으로 선출하고 외교권을 스웨덴에 이관하면서 성립되었다. 1815 제정된 연합법은 스웨덴에서는 일반 법령의 하나였고, 노르웨이에서는 헌법이었기 때문에 스웨덴이 노르웨이에 대해 법률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스웨덴 왕은 노르웨이 총독직과 내각 임명권을 갖고 있었다.⁶⁶⁾ 노르웨이는 입헌군주제 하 독자적인 의회를 갖고 있었고, 종전의 글루스부르크 왕실은 상징적 존재로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두 제국은 동군연합으로 외교, 군사, 재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같았지

64)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슈티지엔 갈리치아, 로드메리아(루테니아), 슬로바키아, 트란실바니아, 바나트, 크로아티아, 클라인, 쿤스텐란트, 슬라보니아, 부코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스트리아, 달마티아 등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65)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제국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국 행정부'를 구성했고, 공동 정부의 예산은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보다 더 많이 부담했다. 따라서 재무장관은 오스트리아인이 임명되었다. 제국 공동정부 장관은 공동정부가 합의하고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임명했다(김지영, 2012, 「이상과 현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공동외교 정책과 독립당의 활동」, 『독일연구』 23, 138~141쪽).

66) 연합 제국의 왕이 임명하는 총독은 1829년부터 노르웨이인이 임명되었고, 1856년 이후 공석 상태였다. 1850년대 노르웨이는 총독직의 폐지를 요구하여 스웨덴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1860년 노르웨이 의회는 노르웨이 헌법의 고유 권한과 연합 내 평등, 노르웨이 동의 없는 연합조약 개정반대 등을 결의하였고, 스웨덴과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73년 총독직이 폐지되었다(김인춘, 2016, 「스웨덴 식민주의와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 연합 해체 후 탈민족주의의 노르딕 공동체와 평화」, 『서양사연구』 54, 89~93쪽).

만, 통치실천 기구인 정부 구성권의 소재는 달랐다. 노르웨이는 독자적인 내각 구성권이 없었지만, 헝가리는 독자적 구성이 가능했다.

일진회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을 정합방 모델로 제시한 것은 정부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민동지찬성회 등 찬성자들이 스웨덴-노르웨이제국을 정합방 모델로 제시한 것은 대한제국 황실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고, 와해된 통치를 일본에 의지해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남 유생 박대현 외 5명이 일진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북미의 합중국과 독일의 연방제는 오래되었거니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는 두 정부가 하나의 군주를 받들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두 황실이 정치를 동일하게 하니 지금의 정합방은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제도를 모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독자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황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⁶⁷⁾ 그리고 권직상 등의 장서에서는 “정합방으로 말하면 우리 황실의 종사를 드높이고 우리 백성과 동포를 보호하고, 우방의 충고와 지도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지식을 계발하고 교육을 양성하여 함께 문명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⁶⁸⁾ 했다. 이들은 통치권의 소재보다는 통치의 실천 내용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 그것이 문명화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권자의 상징성을 유지하되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문명화를 위해 ‘통치’는 일본의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는 이들의 생각에는 지배자가 더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 지배와 통치가 분리된 관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배와 통치를 분리했던 사유는 통치권을 일본에 넘기자는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 “일단 성립한다면 일본의 영광과 한국의 복리가 실로 어찌하며 ... 그 실행 책임에 있어서 일본은 반드시 타당한 자를 택하여 그 양어깨에 짐을 지운다면 나라의 형편이 必亡에서 존립하며, 인민이 必死에서 살아날 것이니 모두 대일본의 은택”이라는⁶⁹⁾ 언급이 그것이다.

67) 「儒生致函會長」, 『國民新報』 1910.01.26.

68) “정합방은 우리 황실의 종사를 드높이고, 우리 백성과 동포를 보호하고, 우방의 충고와 지도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지식을 계발하고 교육을 양성하여 함께 문명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縉紳儒生の 長書」, 『國民新報』 1910.01.23).

이토 히로부미 사망 사건 이후 일본 내에서 제기된 ‘병탄’론이 정합방 주장과 지지에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분출한 것은 치안이 무너지고, 민생이 파궤해진 상황, 즉 ‘통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었다. 찬성서의 현실 인식은 ‘통치’의 와해였다. “진나라 망한 것은 덕정이 없었기 때문”이고⁷⁰⁾ “요역이 빈번하고, 농민이 근면하게 고생하지만, 한해를 버틸 밀천이 없고, 통화가 사라져 상인들이 탕진하고 점포를 닫아야 하는 탄식이 많으니 우리 2천만 민중을 몰아세워 하루아침에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라고 정부를 원망했다.⁷¹⁾ “정부가 통감부의 아래에 있어서 한 가지 일과 한가지의 명령이라도 어찌 자유를 얻어서 여기에 이르렀겠는가.”라고 하여⁷²⁾ ‘보호국 체제’에서 정부의 기능, 통치가 마비된 것을 비판했다. “인민이 날로 곤란하고 파궤해져 빈사지경에 빠진 것”과 “폭도의 무리가 난리를 일으켜 불측한 변란의 발생” 그리고 “전국 백성의 생계가 땅에 떨어져 지켜내지 못하고 원망이 골수에 박힌 것” 등의 “근본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정부에 있습니다.”라고⁷³⁾ 하여 ‘보호국 체제’에서 와해된 통치를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강한 지향이 표출되고 있었다.

황실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능한 정부를 ‘일본의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주권자는 더는 통치실천의 주체가 아닌란 것과 정부의 기능, 즉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권자와 인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주권자와 통치를 분할하고, 다시 통치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사유가 발견된다. 이러한 사유는 ‘王之者 如保赤子’라는⁷⁴⁾ 주권자와 통치자가 결합한 유교의 이상적 국가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유교적 사유에서 왕은 덕정과 안민, 인민의 恒産과 恒心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였다. 지배자인 왕이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지배자로서의 왕의 지위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었다. 유교적 사유에서 발견되는 지배와 통치의 관계에는 어떠한 틈도 없다. 대신 이상적 군주 모델과 혈연적

69) 「儒生の 建白書—上統監書」, 『國民新報』 1910.01.06.

70) 「上內閣書」, 『國民新報』 1909.12.26.

71) 「縉紳上統監書」, 『國民新報』 1910.02.22.

72) 「儒生長書全文」, 『國民新報』 1910.01.05.

73) 「儒生の 建白書」, 『國民新報』 1910.01.06.

74) 『易經』 권3, 「豐川易說」.

계승으로 세워지는 군주의 실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뿐이었다.

조선 사회에서는 이러한 간극을 매우기 위해 왕이 진정한 통치실천의 주체가 되도록 왕위 계승자를 교육하고, 왕의 통치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었다. 그러나 통치실천은 인민의 생계 문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재화의 생산과 분배라는 경제영역에 의해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영역의 힘이 강해질수록 통치는 이상적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왕의 지배자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관용과 시혜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지만, 19세기 대규모 민란의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경제영역의 힘, 시장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적 영역이 확대될수록 통치는 지배자의 손에서 벗어나 점차 공중(the public)의 영역으로 이전된다. 조선 후기 통치 결정이 공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이 급증하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시장 또는 사회의 힘이 통치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교의 이상적 국가상과 현실의 간극은 경제영역의 힘이 강해질수록 벌어지는 것이었다. 통치실천의 효과가 '안민'-'민생의 안정'이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될수록, 구성원의 생계 문제는 왕의 통치영역에서 벗어나 시장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통치가 더는 지배자인 왕의 실천이 아니란 점을 선언한 것은 유길준이었다. 그는 『서유견문』에서 국가는 '외행하는 권리(자주 독립성)와 '내행하는 권리(통치권)'를 갖고 있고, '내행하는 권리'가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성을 획득해야 '외행하는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행하는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군-민의 관계를 정부-인민의 관계로 전환하고, 임금은 국가의 최대권자로 위치 지웠다. 『서유견문』에서 임금은 지배자이지만 통치하지 않는 존재였고, 정부는 통치를 실천하는 기구였다. 정부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탈인격적 장치였고, 이 장치는 다시 왕의 대권(독립주권) 유지를 위해 인민을 보호·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⁷⁵⁾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내행하는 권리'를 통해 국

75) 김윤희, 2009, 『근대 국가성원으로서의 인민개념 형성』, 『역사문제연구』 13(1), 295~331쪽.

가의 독자성을 대표하는 ‘외행하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배와 통치의 분리와 연결, 즉 지배와 통치의 절합(articulation)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배와 통치의 분리라는 관념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황실과 정부가 분리되는 제도화를 통해 확산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발행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등의 언론 매체의 정치개혁론은 거의 모두 정부 개혁론이었다. 이들 매체는 문명개화, 자강이란 국가 아젠다를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민기본권을 보장하고 인민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들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료의 도덕성, 정책실시의 합리성, 효과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끊임없이 비판했지만, 주권자인 황제에 대해서는 통치실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황제에 대해 무한한 충성을 다짐하고 황제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는 국가의 독립주권을 찬양했다.

대한제국 황제에 대한 충성과 찬양은 그가 더는 주권의 실천인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군립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입헌군주제 국가의 주권자인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도 주권자로서 무한히 찬양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근대 국가개념이 전근대의 그것과 다른 것은 ‘독립주권’만이 아니었다. 지배와 통치가 분리되고 다시 연결되는 사유는 유교적 통치이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였다.⁷⁶⁾

정합방 찬성서에는 ‘춘추의리’, ‘종묘사직’, ‘황실존영’ 등의 유교적 언표가 등장하지만, 이들은 이미 유길준이 선언한 지배와 통치가 분리된 국가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단군과 기자 이래’, ‘태조 500년 창건하신 넓은 터’, ‘2천만 인민’, ‘임금과 나라의 보존’이란 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통치실천과 분리된 주권자에 대한 ‘찬양’, 통치를 실천하지 않지만, 국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민’ 또는 정치공동체를 증명하는 ‘민족’에 대한 찬양이었다.

와해된 통치를 복구하고 세계의 보편성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문명화를

76) 지배자가 통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배와 통치는 분리된 것이다. 그러나 지배와 통치는 국가의 존재와 실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주권은 나라의 독자성이었고 통치는 세계 각국에 통용되는 보편성을 향해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지배와 통치의 이러한 관계를 절합이라고 한다.

이루기 위해 일본과 연합하더라도 주권자가 존재하고 그 주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망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주권, 지배자의 권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병탄’에 반대했고, 권위를 확인시켜줄 인민을 일본 국적자로 하자는 이완용의 합방 5조건에 반대했다. 이들은 ‘주권’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권을 위해 통치실천을 일본에 의존하자고 주장한 것이었다.

소위 ‘유생’이 올랐다는 찬성서에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선언되고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제도적으로 승인되었던 지배와 통치의 절합이란 근대 국가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했던 유교적 언표는 유교의 이상적 국가상의 맥락에서 탈각되어 근대 국가에 대한 사유 속에 재코드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정합방을 황실과 인민을 위한 결단으로 확신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근대 주권국가의 경쟁 질서가 만들어 놓은 담론의 자장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4. 맺음말

1909년 일진회의 정합방 청원에 찬성서를 제출한 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바, 근대적 사유와 동떨어져 있었던 유생층은 아니었다. 이들 중에는 이항로와 전우의 제자, 권상하 등 유명한 학자의 자손들도 있었지만, 절반 가까운 관직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었고, 일부는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학회의 회원이었고, 매국적 미수사건과 관련된 자들도 있었다. 찬성서는 전직 관료, 계몽단체 회원, 유생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찬성서 필두의 인맥을 중심으로 연결된 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려 제출한 것이었다. 따라서 찬성서는 계몽단체들이 생산한 담론과 관료사회에서 유통되는 담론의 자장에 놓여 있었다.

찬성서에는 종묘, 사직, 의, 춘추의리 등의 유교적 언표들이 사용되고 있었고, 대부분은 한문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는 이미 유교적 사유에서 탈각되어 근대적 사유 속에 재코드화되어 있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춘추대의는 조선 시대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동종에 대한 근친의 의리는 사회진화론의 유교적 해석이었던 공양학

의 장삼세론에서 이야기하는 승평세의 실천이었다. 이는 국가 간 경쟁 질서 속에서 지수의 도를 함양하고 보완하는 방법이었다. 동양 문화화, 동양 평화는 대한제국의 자립과 지수를 위한 실천 방법의 하나였다.

찬성서의 국가상 역시 유교의 이상적 국가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유교적 사유에서 왕은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였다. 조선 사회는 이상적인 왕과 왕의 혈연적 계승이란 현실의 간극이 파열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그 관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찬성서에서 왕은 지배자이지만 통치자는 아니었다. 지배와 통치의 분리라는 근대 국가에 대한 사유에 기초하여 찬성자들은 일본의 감독과 지도를 통해 와해된 통치를 복구하고, 인민의 복리와 문명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이 유교적 중화관 속에서 근대 주권국가에 대한 사유가 부재했다는 기존연구의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유교적 연표는 이미 유교적 관념에서 탈각되어 근대 국가를 사유하는 데 동원되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 국가상에 대한 사유를 토대로 문명화된 통치를 통해 주권자의 힘을 찬양하고자 했다. 근대 주권국가의 경쟁 질서 속에서 주권의 위대함과 독자성은 ‘합리적 통치’라는 보편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충군과 애국, 민족의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통감부나 총독부의 통치실천에 협력할 수 있는 관념적 토대였다.

한국 근대에서 친일충군, 친일애국, 친일민족과 같은 인식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이유는 비논리적이거나 왜곡된 사유라기보다는 지배와 통치의 분리, 지배와 통치의 절합이란 근대 국가상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배와 통치를 분리하고, 다시 연결 지어 사유한 것은 이후 어떠한 효과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지배와 통치의 분리,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입헌군주제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좀 더 쉽게 하는 관념적 기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권자가 더는 통치라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가 왕에서 인민으로 바뀌더라도 이에 대한 반감은 일시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왕이 주권자이건 인민이 주권자이건 근대 ‘통치’ 실천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병합’으로 주권자가 사라지더라도 ‘민족’이 주권자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존재를 상상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독립주권’을 근대 국가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생각해왔던 관점으로

인해 지배와 통치의 분리라는 근대 국가의 특이성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더욱이 친일매국 주장으로 평가됐던 정합방 찬성서에서 근대 국가상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근대 한국인의 국가상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아가 이러한 탐색은 자명하다고 여겨진 우리의 국가개념을 낯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합방, 춘추대의, 근대 국가, 유생, 지배, 통치

논문투고일 : 2020. 09. 24

논문심사시작일 : 2020. 10. 23

논문게재확정일 : 2020. 11. 11

참고문헌

1. 자료

『國民新報』 『大朝鮮獨立協會回報』 『總理大臣李完用謀殺未遂事件記錄』 『日韓合邦紀念塔寫眞帖』 『皇城新聞』 『淵齋先生文集卷之二十四』 『국역 매천야록』 『畿湖興學會月報』 『雲養集』 『大韓協會回報』 『大東學會月報』 『宋子大全』 『記言』 『易經』

2. 저서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002.
 김낙진, 『의리의 윤리와 한국의 유교문화』, 집문당, 2004.
 미셸 푸코 저, 오트르망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 도서출판 난장.
 박상섭, 2008, 『국가·주권』, 소화.
 조르조 아감벤 저, 박진우·정문영 역, 2016,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향하여』, 새물결.

3. 논문

김동석, 2015, 「李士龍의 춘추대의에 대한 가치와 시대적 의미」, 『漢文古典研究』 31(1).
 김윤희, 2008, 「동양담론 그리고 주권-정부-인민 관계의 균열과 전복」, 『대동문화연구』 68, 대동문화연구원.
 ———, 2009, 「근대 국가성원으로서의 인민개념 형성」, 『역사문제연구』 13(1).
 김인춘, 2016, 「스웨덴 식민주의와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 연합 해체 후 탈민족주의의 노르딕 공동체와 평화」, 『서양사연구』 54.
 김종준, 2011, 「국권상실에 대한 일진회의 인식 : 문명화론과 합방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김지영, 2012, 「이상과 현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공동외교 정책과 독립당의 활동」, 『독일연구』 23.
 김현우, 2013, 「梁啓超와 朴殷植의 ‘新民說’과 ‘大同思想’에 관한 연구 : ‘個人’,

- ‘國家’, ‘文化’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희, 2008, 「국민신보를 통해 본 일진회의 합방론과 합방정국의 동향」, 『역사와 현실』 69, 한국역사연구회.
- 이영란, 2015, 「상주 공양학과 변법 공양학의 치세론」, 『인문사회21』 11.
- 이태훈, 2010, 「일진회의 ‘보호통치’인식과 ‘합방’의 논리」,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 최영성, 2014, 「남당학의 근본문제와 학파의 계승 양상-춘추대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1.

4. 보고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I』.

Confucian Expressions and Modern National Conception in Supporting Letter for 'Jeong-Hapbang'

Kim, Yun-Hee

The previous study was not interested in how to interpret the different national images that erupted around 'Jeong-hapbang-a kind of real union'. It was because the discussion was being carried out on the premise that it was independent sovereignty. In this article, note that the crack and divis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implicit in the concept of modern stat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national image of the declaration of support for 'Jeong-hapbang', which had been regarded as the residual of Confucian ideas or the idea of unwholesome independence sovereignty. Through th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providing an opportunity to critically reflect on existing research conducted by def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as a modern national idea.

www.kci.go.kr

Key Words : Jeong-hapbang(real union), Chunchu-Daeyi(Great Cause of the Spring and Autumn), Modern national conception, Confucianist, Sovereign, Govern

